

##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3. 제안 이유

-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여성·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,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으로 조정하고 행정변화로 인한 부분적인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 골자

-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과 물가담당국장을 제외한 5명을 위촉직으로 조정하고,
- 정부가 결정하는 의보수가와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상수도료 등을 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,
- 심의대상 중 인상조정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 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,
-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음.

## 5. 검토 의견

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 가운데 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분야를 삭제하고, 위원회 구성을 여성·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으로 조정하며, 인상조정 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 물가 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인 바,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 선정에 있어 참여 폭을 넓힌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